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22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김영진 · 채현일 · 이연희
백혜련 · 김남준 · 신정훈
노종면 · 김 윤 · 이해식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0[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우대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우대지역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